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http://www.daedeok.go.kr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제2018-51호
2018. 6. 18.(월)

차 례

공 고(2)

-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(공고 제2018-518호)1
-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(공고 제2018-519호)2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8년 6월 18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- 사업명 :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 도로사업
- 사업시행자 : 대전광역시장
- 열람기간 : 2018.6.19. ~ 2018.07.02.
-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
 - 대전광역시청 기업지원과(☎ 042-270-3733,3734),
 -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(☎042-608-5113)
- 의견제출기간 : 2018.6.19. ~ 2018.07.02.
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
 -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5-6 외 3필지(1,395㎡)
 - 토지소유자 :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31,2동 1201호(탄방동,공작한양아파트)
-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
 -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5-6번지 메쉬웬스 외 8건
- 기타 :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.

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6월 18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□ 공고 기간 : 2018. 6. 18. ~ 2018. 6. 25.

□ 폐업 내용

소매인 구분	상 호	소 재 지	폐업일
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	디엠마트	대덕구 비래서로26번길 15 (비래동)	2018. 6. 18.

□ 신규접수

○ 기 간 : 2018. 6. 18. ~ 2018. 6. 25.

○ 장 소 : 대덕구 경제과 (대덕구청 별관 건물 2층)

○ 신청 대상자

- 개점된 점포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아니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
-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부적합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○ 구비 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점포가 임대차인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
-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○ 지정 방법

-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(추첨일 추후 통보)

※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(동일주민등록상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)

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

- 기 타 : 단, 개점된 점포이어야 하며, 현지 확인 등에 따라 부적정할 경우 등은 지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처 : 대덕구 경제과 (☎ 608-6924)